

전주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6나10783(본소), 2016나10790(반소) 판결

[점유회수 · 부동산인도]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A
2. 보성이엔시 주식회사
3. 유한회사 진성엔지니어링
4.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C

변론 종결 2018. 7. 19.

판결 선고 2018. 9. 6.

제 1 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39618(본소), 2016가단 17646(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관한 부분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1)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가. 항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부대항소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8. 22. 당시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같은 날 원고들이 고용한 경비원의 제지를 만류하고 이 사건 상가에 방화문 등을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하던 물건을 모두 치우고, 2017. 10. 24.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고용한 경비원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열쇠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2017. 10. 24. 피고로부터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 내지 18행을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국, 판사 김진성, 판사 박미영

1) 원고는 2016. 6. 22.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예비적 반소임을 명시하였으나, 2017. 10. 24. 제출한 부대항소장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당심에 이르러 본소청구의 인용여부와 관계없이 반소청구취지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선해한다.